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 현황 및 정책방향

-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를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us of Internet Pharmaceutical Trade and Policy Directions

박은자(朴銀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컴퓨터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통신, 오락의 수단을 넘어 상거래의 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지만, 최근 그 역기능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며, 특히 건강정보, 의약품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역기능은 건전한 상거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의 장·단점, 국내·외 현황, 외국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인터넷, 무선통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이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¹⁾, 통신, 교육, 오락의 수단을 넘어 상거래의 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시장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이버 마켓(Cyber market)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00년 9~11월의 3개월간 인터넷 이용자의 12.3%가 인터넷 쇼핑을 경험했고, 38.8%는 향후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

보건의료부문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인터넷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1999년 보건의료부문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B2C 시장이 4억 4천만 달러, B2B 시장이 60억 달러에 이르며, 2004년에는 37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³⁾. 우리 나라의 경우 보건의료업체의 31.4%가 B2C 전자상거래를, 13.1%가 B2B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고 있으며⁴⁾, 아직 본격적인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타부문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및 구매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구매를 가능하게 하나, 불건전 정보 유통 및 불법적인 판매의 위험성이 있으며, 보건의료부문에 있어 이러한 불법판매는 건강상의 위해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2000년 7월에 실시된 의약분업은 우리 나라 국민의 의약품 사용 행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전자처방전, 사이버 약국 등의 출현은 또 다른 형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의 장·단점, 국내·외 현황, 외국의 정책을 살펴봄으

1) 2000년 12월 현재 국내 7세 이상 전 인구의 44.7%(1904만 명)가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도 42.5%(181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산원, 『2001 한국인터넷백서』, 2001).

2)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 연구』의 2000년 12월 조사결과임.

3) Forrester Research Inc., *Sizing Healthcare eCommerce*, 1999.

4) 이견직·정영호·정윤혁, 『보건의료부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로써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의 장·단점

1) 의약품과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로 정의되며, 음악, 인쇄물 등 온라인 상에서 직접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적 등의 물리적인 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⁵⁾.

우리 나라에서 법적으로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되도록 하는 등⁶⁾ 판매 및 조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약품의 판매·조제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기존의 ‘약국’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최종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의약품 거래관행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상에서 거래할 경우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의료기관과 의약품 조제기관 사이의 처방전 전달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의 장·단점

(1) 장점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극복】

판매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세계의 고객을 대상으로 24시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약국이 없어 의약품 구매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소비자는 의약품 구매가 용이해지고 야간 등 영업시간에 구매받지 않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비용절감】

판매자는 중간유통단계가 생략되고 판매거점의 운영비가 감소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단시간에 여러 사이트의 가격을 서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 1999년 펜실베니아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비아그라(Viagra[®])와 프로페시아(Propecia[®])의 경우 오프라인 약국보다 10% 비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5) 윤광운 외, 『전자상거래론』, 1999.

6) 약사법 제21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1조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비밀보장】

의약품 구매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

(2) 단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의 불법판매】

외국에서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일지라도 인종, 유전적인 요인 등에 따라 의약품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임의로 구입, 복용하는 것은 건강상의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약품의 불법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직접적인 의사의 진찰 없이 온라인 상에서의 간략한 문진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하는 것은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복용할 위험이 있다.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는 이전에 진료한 적이 없는 환자에 대해 오직 온라인 설문예 기초하여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의학 치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불량약품 구매】

의약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위조약이나 오염된 약,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복약지도 기능 약화】

대면거래시 이루어지는 복약지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책임소재 파악 및 처벌의 어려움】

국내법으로 외국 소재 사이트의 위법사항을 처벌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단기간 판매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주할 경우 처벌이 어렵다.

【개인정보 노출】

구매 및 대금지불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표 1.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판매자	·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극복 · 비용 절감	· 복약지도 기능 약화
구매자	· 편리하게 구매 · 경제적으로 구매 · 비밀 보장	·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의 불법판매 · 전문약품의 불법판매 · 불량약품 구매 · 책임소재 파악 및 처벌의 어려움 · 개인정보 노출

7) Bloom, et al., "Internet Availability of Prescription Pharmaceuticals to the Public", *Annals of Internal Medicine*, Vol.131, No.11, 7 December 1999,

3.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 현황

1) 한국

2001년 1/4분기 사이버쇼핑몰 매출액은 7078억 원으로 2000년 4/4분기 6548억 원 대비 530억 원이 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B2C 거래 규모는 2001년 1/4분기 5253억 원으로 2000년 4/4분기보다 362억 원(7.4%)이 증가하였다. 주된 거래상품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서적 등으로 보건의료산업에 속하는 식음료 및 건강식품의 경우는 약 16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3%를 차지하며, 화장품·향수는 약 170억 원으로 2.5%를 차지하였다⁸⁾.

우리 나라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인터넷상의 사이트 현황을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1년 5월 ‘의약품’과 ‘약국’을 검색어로 하여 ‘야후 코리아’와 ‘심마니’를 통해 검색하였다. ‘의약품’으로 검색한 경우 중복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를 제외한 129개의 사이트가 검색되었으며, 국내사이트가 127개(98.4%)이고 해외사이트가 2개(1.6%)로 해외사이트는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와 미국 소재의 쇼핑몰이었다. 사이트 운영자 형태로 나누어볼 때, 의약품 제조·수입·도매회사가 63개(48.8%), 약국이 8개(6.2%), 관련협회가 7개(5.4%), 정부 및 연구소가 8개(6.2%), 쇼핑몰이 2개(1.6%), 기타가 41개(31.8%)로 인터넷 닷컴기업, 정보센터, 언론기관 등이 기타에 포함되었다. 2개의 쇼핑몰 중 국내 소재의 1개 쇼핑몰에서는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았으나, 미국 소재의 1개 쇼핑몰에서는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다.

‘의약품’으로 검색된 사이트 중 운영자가 약국인 8개 사이트와 ‘약국’으로 검색된 80개 사이트를 합하여 중복된 6개 사이트를 제외한 82개 사이트의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국내 인터넷 약국 사이트의 주 제공 서비스는 위치정보 등 약국에 대한 소개정보 제공(82개, 100%), 건강정보 제공(66개, 80.5%), 건강상담(31개, 37.8%), 약품정보 제공(15개, 18.3%), 건강식품·위생용품정보 제공(4개, 4.9%)이었다. 5개 사이트(6.1%)에서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내 사이트의 경우 오프라인 약국의 위치정보, 개설약사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오프라인에서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제공정보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 의약품 판매를 준비중이거나 쇼핑몰을 구축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었다.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사이트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 게시판을 통한 전문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나타나고 있으며⁹⁾, 중국, 미국 등 해외 소재 사이트의 불법판매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 불법 광고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인터넷을통한불법의약품처리지침』을 관세청에 시달하고 지난해 7월 명단 공개에 이어 올해 3월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2개 해외사이트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2) 미국

8) 통계청, “2001년 3월 및 1/4분기 중 사이버쇼핑몰조사”, 2001.

9) 2001년 5월 11일자 한겨레신문에서 비아그라, 제니칼 등의 전문의약품이 국내 일부 의료 및 건강정보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보도됨.

1999년 미국의 비처방의약품, 처방의약품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각각 9천만 달러, 1억 6천만 달러이며, 오는 2004년에는 보건의료부문 전체 B2C 시장규모 220억 달러 중 비처방의약품(OTC)이 8.8%, 처방의약품이 71.6%로 처방의약품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⁰⁾. 또한 1999년 의약품, 비타민, 보건의료 관련 제품의 온라인 구매에 2억 달러가 소비되었고, 2004년에는 1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의약품의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¹¹⁾.

거래 증가에 따라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1999년 33개 미국내 사이트를 포함한 46개 온라인 약국을 조사한 Bloom 등의 연구에서 37개의 사이트가 의약품 조제시 오프라인 의사 또는 인터넷상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하였으나, 9개의 사이트에서는 처방전이나 의사와의 상담 없이 처방약의 구매가 가능하였고¹²⁾, 일리노이주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구매, 복용한 성인남자의 사망이 보고되는 등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 외국의 관련정책

1) 미국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의약품을 판매·조제하는 '사이버 약국'의 인증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나눌 수 있다.

미국 National Association of Boards of Pharmacy(NABP)에서는 1999년부터 처방약을 조제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VIPPS(Verified Internet Pharmacy Practice Site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의 면허 요건과 NABP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이트에 VIPPS seal을 수여, 사이트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기준을 만족하는 온라인 약국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VIPP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 정부의 면허 및 감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조제 절차의 안전성, 질 관리를 확보해야 하며, 환자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약사 또는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판매하는 미국 내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외국 소재 사이트에 대하여 사이버편지를 보내어 경고하고 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는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개인정보 이용 등 법률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주정부의 관련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FDA에서는 2000년 11월 온라인 처방약 구매에 대한 소비자 안전 가이드(Buying Prescription Medicines Online: A Consumer Safety Guide)를 발표하였으며, 불법사이트 발견시 FDA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표 2 참조).

10) Forrester Research Inc., *Sizing Healthcare eCommerce*, 1999.

11) Jupiter Communications Inc., *Jupiter's Consumer Survey*, 1999.

12) Bloom, et al., "Internet Availability of Prescription Pharmaceuticals to the Public", *Annals of Internal Medicine*, Vol.131, No.11, 7 December 1999.

표 2. 미국 온라인 처방약 구매에 관한 소비자 안전 가이드

구 분	소비자 안전가이드
의사의 진료를 받아 의약품 처방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치의나 다른 허가된 의료제공자가 처방한 의약품만을 구입 · 조제하는 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 의사에게 문의함. ·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없이 처음으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음.
적법한 약국인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제시 처방전을 요구·확인하는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조제 · (면허가 있는) 약사에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 · 주에서 허가한 온라인 약국인지 확인 · 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음. · FDA에서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음.
사이트 운영주체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근거를 둔 사이트만 이용 · 고객 서비스 정책이 표시되지 않은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정책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확신하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번호, 병력)를 제공하지 않음.
본인의 직관력을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 처방약을 구입할 때 상식을 이용 · 놀라운 치료 결과를 주장하는 증명되지 않은 사례를 광고하는 사이트에서는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음.
소비자 보호정책에 동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트가 허가된 약국이 아니라고 의심되면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FDA에 보고함.

자료: <http://www.fda.gov/cder/drug/consumer/buyonline/guide.htm>

2)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8년 51회 World Health Assembly에서 의약품과 인터넷에 관한 가이드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의약품규제당국, 의약품정보전문가, 소비자단체, 제약회사 협의 하에 일차적으로 가이드가 개발되어 보완 중이다. 이 가이드는 ① 인터넷은 가치 있는 정보원이거나 정보 출처를 확실히 알고 신뢰해야 함, ② 인터넷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 및 의료정보를 찾아야 함, ③ 인터넷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정보를 찾아야 함, ④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시 주의해야 함, ⑤ 본인 스스로 치료하거나 의약품 복용을 바꾸기 전에 보건의료전문가와 상의할 것의 5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구매시 주의해야 하는 이유로는 ①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보증이 부족할 수 있음, ② 복용·사용지시가 부적절할 수 있음, ③ 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④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 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부정의약품일 수 있으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⑥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⑦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 있음, ⑧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⑨ 이름이 같은 제품일지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성분으로 된 제품일 수 있음, ⑩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5. 정책방향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의약품 거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타품목과 비교하여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거래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개방성과 보건의료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하고 시기적절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의약품을 자가투약하는 경향이 강하고 최근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약품 구매의 어려움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으로 처방전을 전달하는 전자처방시스템이 개발되어 일부는 실용화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법규정 미비는 음성적인 거래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된 법규정을 조속히 재·개정하여 적법한 상거래의 범위, 절차,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상의 직접적인 진료 및 처방은 전통적인 진료형태를 변화시키는 등 보건의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 학계 및 관련 기관·단체의 광범위한 논의 및 연구를 거쳐 관련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불법사이트를 단속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한계가 있으므로 제재 및 단속과 아울러 사이트 운영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상거래를 유도한다.

셋째, 의사·약사 등 관련전문가들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거래 범위 및 악영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한다.